

2026년 완주군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완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 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분 야
일반행정	한시임기제 9호 (주35시간 근무)	28명	임용일부터 27.6.30.까지	○ 일반행정사무·통합민원 등 ○ 휴직자 공백에 따른 대체 업무
일반행정 (장애인 전형)	한시임기제 9호 (주20~35시간)	2명		

- ※ 근무장소 : 완주군 내 결원 발생부서 어디든 근무 가능(본청, 읍면 등)
- ※ 근무처는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장애인 전형의 주당 근무시간은 임용약정시 결정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 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으로 되어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자격요건

직 급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1. 6개월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 (사기업 포함) 등에서 일반행정·복지·교육행정 사무 또는 민원사무 실무경력 ※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응시가능
	일반행정 (장애인 전형)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일) 현재 **지방한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4.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

채용분야	연봉액	산출기초	비고
일반행정 (한시임기제 9호)	24,636천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 따른 봉급액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이 아닌 경우 근무시간 비례	주35시간

※ 기본급 외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직급보조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등)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복무사항(근무시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 장애인 전형의 근무시간은 임용약정시 결정하며, 근무시간은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 특별근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비상근무 등

※ 복무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름

○ 보험가입

-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능 대상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희망시)

5. 시험방법 및 일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 '상',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평점요소 중 '가'평점요소가 '상'인 경우 1순위, '가' 평정이 동일한 경우 차순위 평점요소가 '상'인 경우 1순위임
- * (불합격 기준) 위원 1인당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2인 이상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본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의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23-225호)

○ 채용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4. 28~30. (화~목)	'26. 5. 7.(목)	'26. 5. 15.(금)	'26. 5. 18일 주간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재공고 등)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에 공고

▸ 완주군청 홈페이지 ⇨ 시험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4. 28(화).~30(목)

○ 접수장소 :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인사교육팀으로 연락바람.(☎063-290-2263)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주소 : (우55352)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4층)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현금X)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완주군 수입인지(한시임기제9호 5천원) - 완주군청 1층 열린민원과에서 구입 ※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경력증명서 1부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 시간제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 불인정	
6.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증에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출력 가능	필수
7. 자격증 증명서 1부	○ 각종 자격증 사본 제출	해당자
8.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확인서 등 택1	해당자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해당자
10.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 이력 반드시 포함(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1.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12. 위임장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1부	해당자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은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시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등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조사(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복무담당자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채용시 담당업무에 대한 사항 및 채용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063-290-2263)

9. 붙임

- 응시원서 양식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 응시포기서 1부. 끝.